#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김용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67

발의연월일: 2024. 8. 14.

발 의 자:김용민·박해철·이성윤

장경태 • 박지원 • 이건태

박균택 · 서영교 · 전현희

한준호 · 김승원 · 문정복

임미애 • 전재수 • 주철현

문진석 • 민형배 • 김 현

의원(18인)

찬 성 자 : 김동아 의원(1인)

### 제안이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부독재 정권을 거치며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음. 민주체제 전환 이후에도 억압적 정권의 국가범죄는 제대로 단죄되지 못하고 진실위원 회나 배상 등의 형태로 우회돼서 처리되고 있고 5.18민주화운동 등 극히 제한적인 사례에서만 공소시효에 한해서 특례를 인정받고 있음.

국가의 폭력적인 과거사는 반드시 진실규명과 반성이 선행되어야 하고 명예회복과 화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성이 지속적 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한 범

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공소제기를 하더라도 면소판 결을 내리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국가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국가범죄 전반에 대해 공소시효 및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 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함(안 제3조).
- 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 구권에 대해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함(안 제4조).
- 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해서는 이 법을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함(안 제5조).
- 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규정에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함(안 부칙 제2조).
- 바.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는 진정소급효를 부여하고,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함(안 부칙 제3조).

#### 법률 제 호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특례를 정함으로써 국가권력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정의) 이 법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
  - 1. 공무원(「행정기본법」 제2조제2호나목의 공무수탁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를 범한 경우
  - 2.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형법」 제125조의 죄를 통하여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3. 군의 지휘관·지휘자가 「군형법」 제62조의 죄를 통하여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제3조(공소시효의 배제) ①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 제4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의「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한다.
  - ②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국가재정법」 제96조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나 소멸시효 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공소시효 특례의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한다.
- 제3조(소멸시효 특례의 소급적용) ① 이 법 시행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한다.
  - ②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